

창원지방법원 2022. 10. 13 선고 2021나6060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창원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

변 론 종 결 2022. 9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3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1가소194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B 도로 59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를

199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30년 정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1991. 11. 13. 이 사건 토지 중 61/202 지분에 관하여만 1991. 10. 28.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, 나머지 141/202 지분에 관하여는 2021. 3. 15.에야 같은 일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가 최초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2021. 3. 15.까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그러나 갑 제1, 3 내지 7, 10, 18, 22호증, 을 제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, 즉, ① 피고가 C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창원시 D 답 202㎡(이하 ‘이 사건 분할 전 토지’라고 한다) 중 61㎡에 대하여 보상금 32,025,000원을 지급하고, 편의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1/202 지분에 관하여 1991. 10. 28.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(창원지방법원 1991. 11. 13. 접수 제55813호), ② 이 사건 토지는 1993. 3. 9.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된 토지이고, 2001. 3. 26. 그 분필등기과정에서 종전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분할된 위 각 토지1)에 그대로 전사되었는데, 피고가 1991. 10. 28. 협의취득한 위 토지 61㎡ 중 일부가 바로 이 사건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토지와 창원시 D 대 143㎡의 공유관계는 단순 공유관계가 아닌 ‘구분소유적 공유관계’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(즉, 원피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창원시 D 대 143㎡ 중 2㎡는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·수익하고, 창원시 D 대 143㎡ 중 나머지 141㎡는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·수익하는 관계이고, 위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 등기라고 할 것이다)2),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해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141/20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무단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.3) 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하상제, 판사 장우영, 판사 진민희

1) 이 사건 토지와 창원시 D 대 143㎡

2)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 둔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다(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다77191 판결 등 참조).

3)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5다37369 판결 취지 등 참조